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. 7. 7 선고 2020가단323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주식회사 D

변 론 종 결 2021. 6. 23.

판 결 선 고 2021. 7. 7.

## 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C는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2. 21.부터 2021. 7. 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주식회사 D는 1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1. 18.부터 2021. 7. 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법률상 원인이 없이 송금한 금원의 반환 청구.
2.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김정태